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1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상휘・박성훈・최수진

최은석 · 정동만 · 이헌승

이달희 · 김태호 · 김장겸

박준태 • 윤영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

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를 "제12 조제1항에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	②		
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3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u>	<u>제12조</u>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u>제1항에도</u>		
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			
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u>,</u>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